

# 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72호 2024년 12월 6일(금)

## 공 고

-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 ..... 2

## 기 타

- 속초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행정예고 ..... 4

발행 : 시 민 소 통 과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#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(신고)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(변경)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6일

## 속 초 시 장

- 가. 공 고 명: 건축허가(신고)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(변경) 공고
- 나. 도로위치: 속초시 도문동 1493-3번지 외 6필지
- 다. 공고방법: 속초시공보,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
- 라. 공고기간: 2024. 12. 6. ~ 2024. 12. 20. (14일간)
- 마. 도로 지정 조서

소재지	지 번	지 목	변경 전		변경 후		소유자	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(신고)번호 (허가(신고)일)	비 고
			면적(㎡)		면적(㎡)				
			공부 면적	지정 면적	공부 면적	지정 면적			
강원도 속초시 도문동	1493-3	임	1,156	969	1,156	558	주이스○	속초시 도문동 1493-4번지 외 3필지 단독주택 2022-건축과-신축허가-39 (2022. 6. 30.)	건축주: 주이스○
	1493-16	임	450	15	450	11			
	1493-22	임	2,087	119	2,087	110			
	1493-23	임	2,479	384	2,479	712			
	1493-24	임	557	382	557	295			
	1495-1	전	69	14	69	5			
	1495-4	임	87	38	87	26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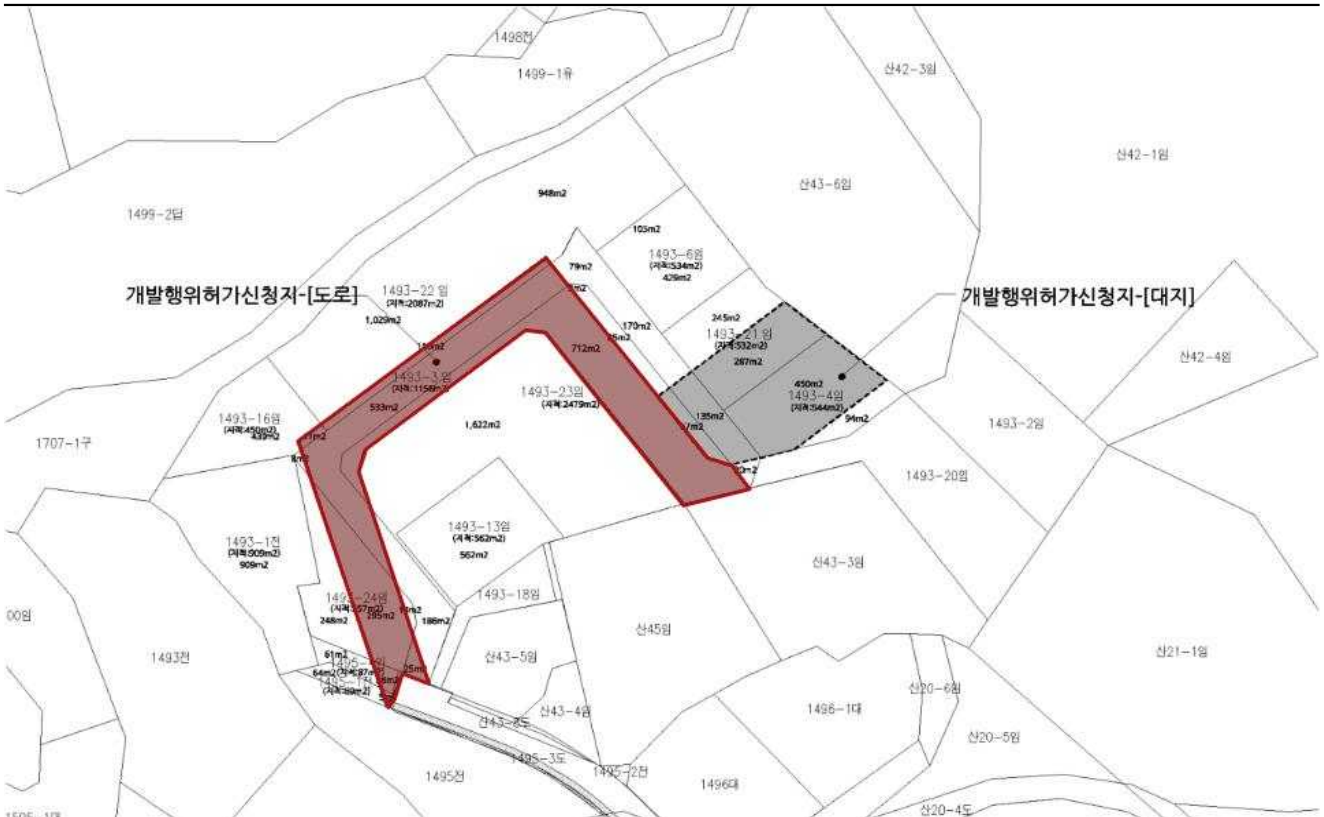
- 바. 관계도서: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(열람가능)
- 사. 문의사항: 건축과 건축허가팀(☎033-639-2774)

## 위치도 및 현황도



위치도

축척 NONE



현황도

축척 NONE

## 속초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 행정예고

속초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(영상·음성기록장비) 추가 운영과 관련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2024년 12월 2일

속 초 시 장

1. 행정예고 목적 :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(영상·음성기록장비)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
2. 행정예고 : 2024. 12. 2. ~ 2024. 12. 23.(21일간)
3. 공고방법 : 속초시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sokcho.go.kr/>)
4. 관련근거  
가.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)  
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5. 운영 장소 및 수량

운영장소	운영대수	상세주소	비고
계	66		
속초시청 종합민원실	20	속초시 중앙로 163	(4대 추가운영)
동 주민센터 8개소	46	동 주민센터	

6. 운영목적 : 민원인의 폭언·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 보전

## 7. 촬영범위 및 시간

가. 촬영범위 : 근거리

나. 촬영시간 :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(욕설, 헐박, 성희롱 등), 폭행,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를 하거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할 시

8. 운영관리 :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및 각 동 주민센터

## 9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팩스 등의 방법으로 속초시청 민원토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4. 12. 2. ~ 12. 23.(21일간)

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(속초시 중앙로 183), 팩스(fax 033.639.2385)

다. 제출서식 : 의견제출서(붙임 참조)

라. 문의처 :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(☎033-639-2723)

바. 기타사항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붙임 의견제출서 1부. 끝.

[별지 제11호서식]

**의견제출서**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속초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**유의사항**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